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5.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4828호(94. 12. 22)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95. 6. 30일까지 소속 자치단체에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무직 정원으로 증원.
- 의회사무기구가 양주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조례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원관리의 원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관리

※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별도유지

□ 주요골자

- 가. 군 본청의 정원을 259명에서 260명으로 조정(안 제2조 제1호)
- 나. 의회사무과 정원 11명 신설(안 제2조 제2호)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양주군의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과”를 삽입하고, 제1호 군본청 “259”를 “260”으로하고 제2호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과 : 1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양주군의 본청,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군본청 : <u>259명</u> (신설)</p> <p>2. (생 략)</p> <p>3. (생 략)</p> <p>4.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양주군의 본청, 의회 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 <u>260명</u></p> <p>2. 의회사무과 : 11명</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